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8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2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2
나. 검토의견	5

I. 개요

1.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8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12. 24.
- (3) 회 부 일 : 2024. 1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¹⁾를 감면하는 것임.

1992년 신설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율]

구 분		지 역 및 업 종	감면율(%)
기업규모	소기업	도매업등(의료업 포함) 업종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2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 업종	5
		수도권 안의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1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15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함.

1)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²⁾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조 5,336억원이며, 소득세 감면규모는 1조 3,738억원이고, 법인세 감면규모는 1조 1,598억원이었음. 2024년과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2조 3,639억원과 2조 5,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	9,995	9,534	19,528
2022	12,632	10,858	23,489
2023	13,738	11,598	25,336
2024(전망)	13,133	10,506	23,639
2025(전망)	13,998	11,002	25,000

주: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소기업의 매출액 산정 규모는 세부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으로 상이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혜현황을 보면, 활용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³⁾

2011년 본 제도 활용기업 수는 법인과 개인 각각 12만개 및 67만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21만개와 94만명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기업당 수혜규모는 법인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법인수	125,046	131,459	141,632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감면액	602,926	632,403	625,492	696,669	759,247	867,029	1,011,138	1,080,514	953,514	987,883
법인당 수혜규모	4.82	4.81	4.42	4.62	4.75	5.02	5.34	5.34	4.56	4.52
개인사업자수	677,200	704,554	733,448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1
감면액	649,429	637,691	684,497	901,040	997,218	1,049,203	1,140,906	1,088,412	1,067,950	999,484
개인당 수혜규모	0.96	0.91	0.93	1.18	1.21	1.21	1.23	1.14	1.09	1.05

자료: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p.39

3)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p.38

나.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내용: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5~30%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20	10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30	15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30	15		
○ 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감소 ○ 적용기한: 2025. 12. 31. ☐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공포한 날					

* 문금주의원안 2024. 12. 24. 발의(의안번호 6885)

☐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체 수는 804만 2,726개로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895만 6,294 명으로서 전체 종사자 수 중 81.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소재 및 부품 업종 등 산업생태계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소상공인 폐업자수는 2023년 91.1만 명으로 2021년 81.9만 명 대비 9.2만 명 증가하였고,⁴⁾ 법인 파산 신청건 수는 2023년 1,657개사로 2021년 955개사 대비 702개사 증가하였음.⁵⁾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자산규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인 사업자의 영업이익률과 자산규모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4)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5) 법원통계월보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 제도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⁶⁾

둘째, 동 제도의 효과로서 전체 업종의 평균 실효세율이 1.94%p가 인하되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차이는 2.24%p로 확대되어, 업종별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p.183

7)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p.183